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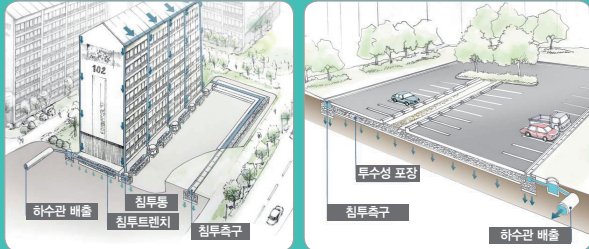
# 물순환의 시작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부터

서울시는 악화된 물환경을 도시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계획 수립을 위해 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목적**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내용**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에 떨어지는 빗물이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빗물분담량을 정함
- 기대효과** 1.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를 효율적으로 제어 및 관리  
2. 악화된 물순환 및 물환경의 회복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침투, 여과, 증발 등 자연 형태와 유사하게 빗물유출수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빗물을  
침투·저류·이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물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아름다운 물순환도시 만들기

건강한 수질과 생태계 형성,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부터  
시작됩니다.

#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물순환정책과 02) 2133-3763

# 도시화에 따라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대형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흙과 녹지위를 덮게 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 집중호우 시 하수관 용량 초과로 도시형 홍수의 위험 가중
-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
- 증발산량 감소로 도시 열섬현상 심화
- 비점오염 직접배출로 하천 수질 오염

급격한 도시개발이 물순환에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개발기법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 각종 개발사업에 사전협의를 적용되요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권고사업**  
모두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전협의 대상

#### 조례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
-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문화, 관광지 조성 사업
- 학교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
-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폭 8m 이하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 조례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2014. 2. 9)

## 저영향개발에 한 걸음 다가가 볼까요



수자원인 빗물의 활용과 관리에 따른 필요시설을 갖추고  
**물부족 해결 및 물순환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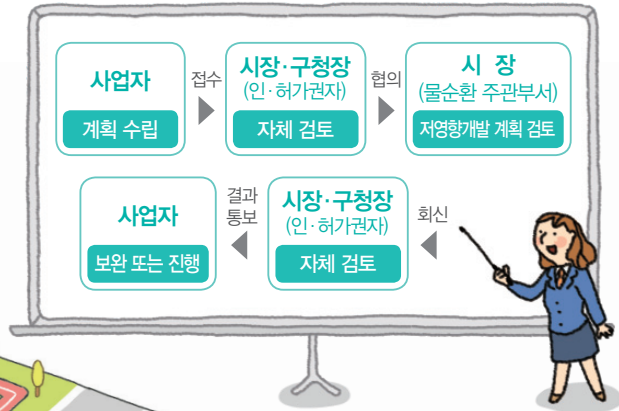
### 협의시기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

### 협의기간

- 사전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 통보

### 협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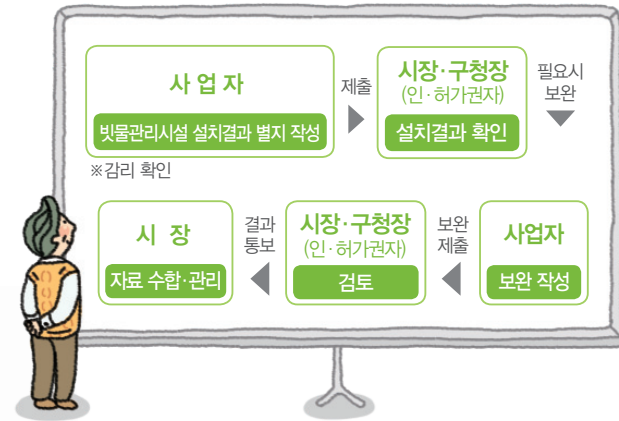
## 반드시 **설치결과**를 알려주세요



준공 시에도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통보**가 필요합니다.

### 준공(사용승인) 시 조치사항

-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통보** (감리확인서 포함)
- 처리 절차



### 여기서 잠깐!

**Q** 저영향개발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 A**
- 사업개요, 목적, 배경 등 사업의 일반현황
  - 빗물관리 대책량 및 적용근거
  - 빗물관리시설 도입의 계획 여부 및 적정성
  -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Q** 설치가능한 빗물관리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A**
-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침투통, 투수성 포장 등

## 대규모 개발사업은 별도자문을 구하세요



대지면적 **10,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별도자문**이 필요합니다.

### 자문주체 물순환 시민위원회

### 자문시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하기 **30일 전**, 물순환정책과에 자문 요청

### 자문대상

- **공공개발**  
현재 용역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모든 공공 공사
- **민간개발**  
대지면적 10,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주의사항

#### 사전협의 완료 전 개발사업 허가 불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음
- 시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원·학교·도로·주택 등 다양한 곳에 사전협의를 적용되고 있습니다.